

# 2024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 Part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 등록신고 실무 안내



#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 목 차

---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등 실무 안내

- 최초등록,
- 변경 등록 및 신고(상호, 주소 변경)
-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휴·폐업 승인

###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등 실무 안내

- 최초신고
- 변경 신고(상호, 주소 변경)
- 합병, 분할, 양·수도 신고
- 휴·폐업 신고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등 실무 안내





# 1-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최초 등록

## 관련 규정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최초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을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li> <li>○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li> </ul>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9조 제1호 |



# 1-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최초 등록

## 시 기

- 개인위치정보사업 시행 전



## 준비 서류

- ①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②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1벌)
-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추가요청자료(임원명세 등)
-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 ⑤ 법인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



# 1-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최초 등록

## 등록신청서 작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① 등록신청서 [ ] ②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고, 해당이 없으면 공란에 표시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개월    |
|------------|-----------------|---------|--------|
| 신청인        | 상 호(또는 명칭)      |         |        |
|            | 성 명(대표자)        |         |        |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 E-Mail |
| ①등록<br>신청서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        |
|            | 개인위치정보사업용 주요 설비 |         |        |
| ②변경<br>등록서 | 주요 변경사항         | 기 준     |        |
|            |                 | 변 경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
| 신청인(대표자)<br>제출서류 | ①등록신청서 | 1. 사업계획서 1부,<br>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br>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br>4. 영업승용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 ②변경등록서 | 1. 위치정보시스템 문서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1부,<br>2. 위치정보시스템 문서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발달업무형<br>확인사항    | ①등록신청서 | 발달업무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승용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                  | ②변경등록서 | 개인위치정보사업종류사실  |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80g/㎡)]

## 사업계획서 작성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제정 2008.05.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05호
- 개정 2009.11.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 개정 2012.03.1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9호
- 개정 2012.06.2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 개정 2014.11.2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9호
-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6호
- 개정 2018.06.1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05호
- 개정 2018.10.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1호
- 개정 2022.04.2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0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 제1절 등록신청요령

▶ 작성양식 및 요령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에서 ‘위치정보’로 검색 시 다운로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1-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최초 등록

## ▶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양식에 따라 법인 및 사업 개요, 등기임원(감사 포함) 등의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등 작성**

**[접수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제출,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및 서식->등록 및 신고 서식 자료실 참조]**

### 추가 자료 양식

#### 1) 법인 및 사업 개요

|   |  |   |
|---|--|---|
| 법인명<br>(법인등록번호)<br>※ 법인등기부 등본 상<br>등록번호를 기재   |  |   |
| 법인설립일자<br>※ 법인등기부 등본 상<br>회사설립연월일과 기재   | 년 월 일  |   |
| 대표자<br>※ 법인등기부 등본 상<br>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   |
| 직원 (명)  | 전체   | 명 |
|   | 위치정보사업<br>종사자  | 명 |
| 재무상황<br>(21년말 기준, 백만원)<br>※ 22년도 설립 결산인<br>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br>재무상황을 기준<br>※ 재무제표 상 수치의<br>일치하게 작성 | ○ 자산총계 :<br>○ 자본총계 : (자본금 : )<br>○ 부채총계 :<br>○ 매출액 :<br>○ 당기순이익 :  |   |
| 주요설비(설치장소)  | ☒ 웹서버(서버), 웹서버(경기도 안양, 클라우드(미국 캘리포니아)  |   |
| 현재 주요사업<br>(위치정보사업 외)   | ☒ 차량용 블랙박스 및 LTE 소형 셀 전원 제조  |   |
| 위치정보사업 계획   | ☒ IoT 단말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GPS)를 수집하여 차량위치, 차량이동경로, 운행일지 등 차량 관리 서비스 제공<br>☒ 전동킥보드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수집하여 전동킥보드 대역, 반납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제공<br>☒ 브랜드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수집하여 현지 점검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br>☒ 어린이집 등·하원 아동의 위치정보(Beacon, GPS)를 수집하여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출결관리 서비스를 제공<br>☒ 요양시설 입소자의 위치정보(RFID)를 수집하여 무단이탈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   |

#### 1) 등기임원(감사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별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 (위치정보법 제6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본적지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등록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등기임원(감사 포함)의 교육·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별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 (위치정보법 제6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등록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br>수집/이용동의   | 교육·식별정보<br>수집/이용동의  | 서명 |
|----|---------------------|---|---|----|
|    |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동의 <input type="checkbox"/><br>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윗줄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영문 표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서약서

본 법인은 등록신청 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허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등록신청 규정이 정한 등록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2. 본 법인은 등록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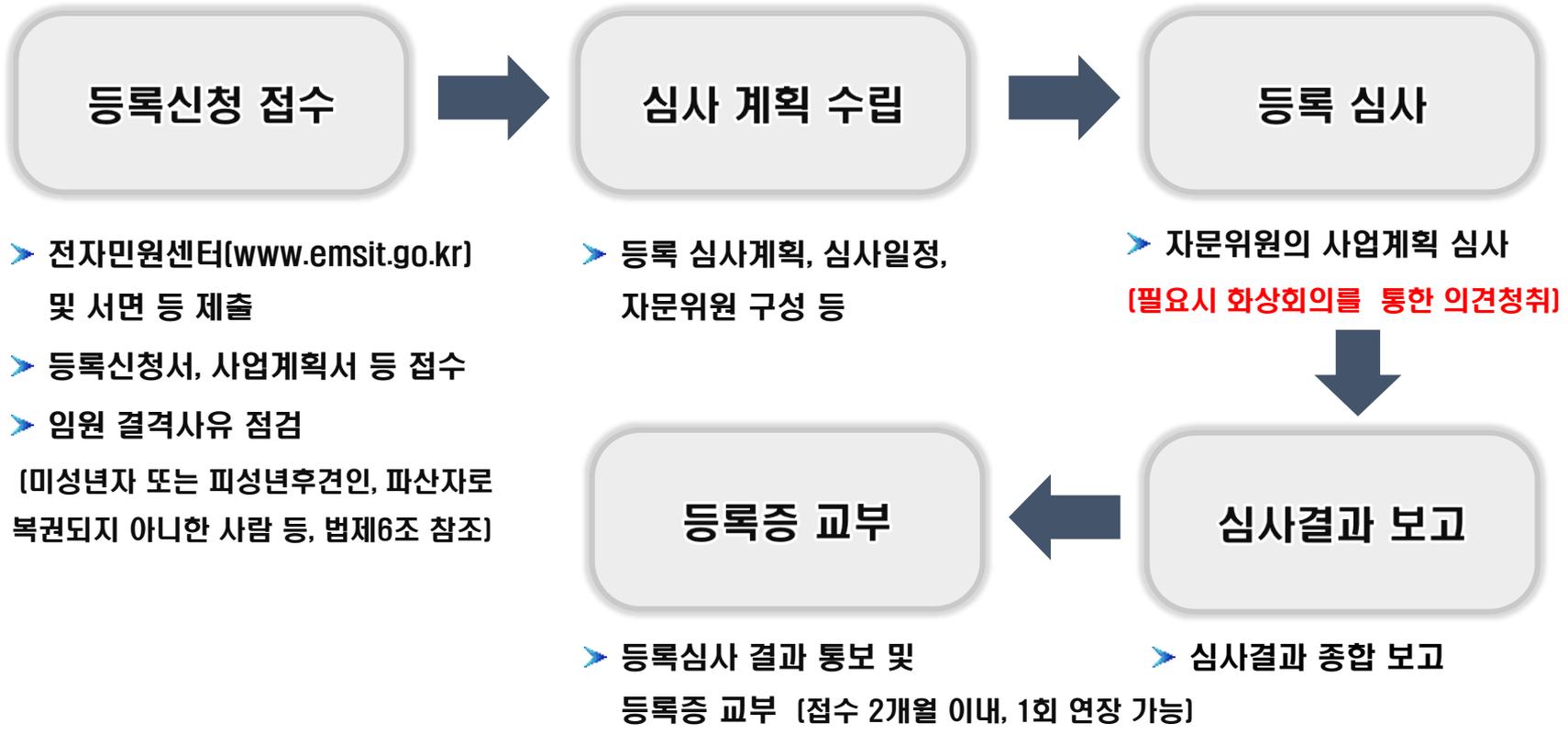
(인)





# 1-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최초 등록

## 변경 등록 절차





## 1-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 관련 규정

- ▶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변경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자</li> </ul>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0조 제1호     |
| 상호, 소재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li> </ul>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43조 제3항 제1호 |



## 1-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 시 기

-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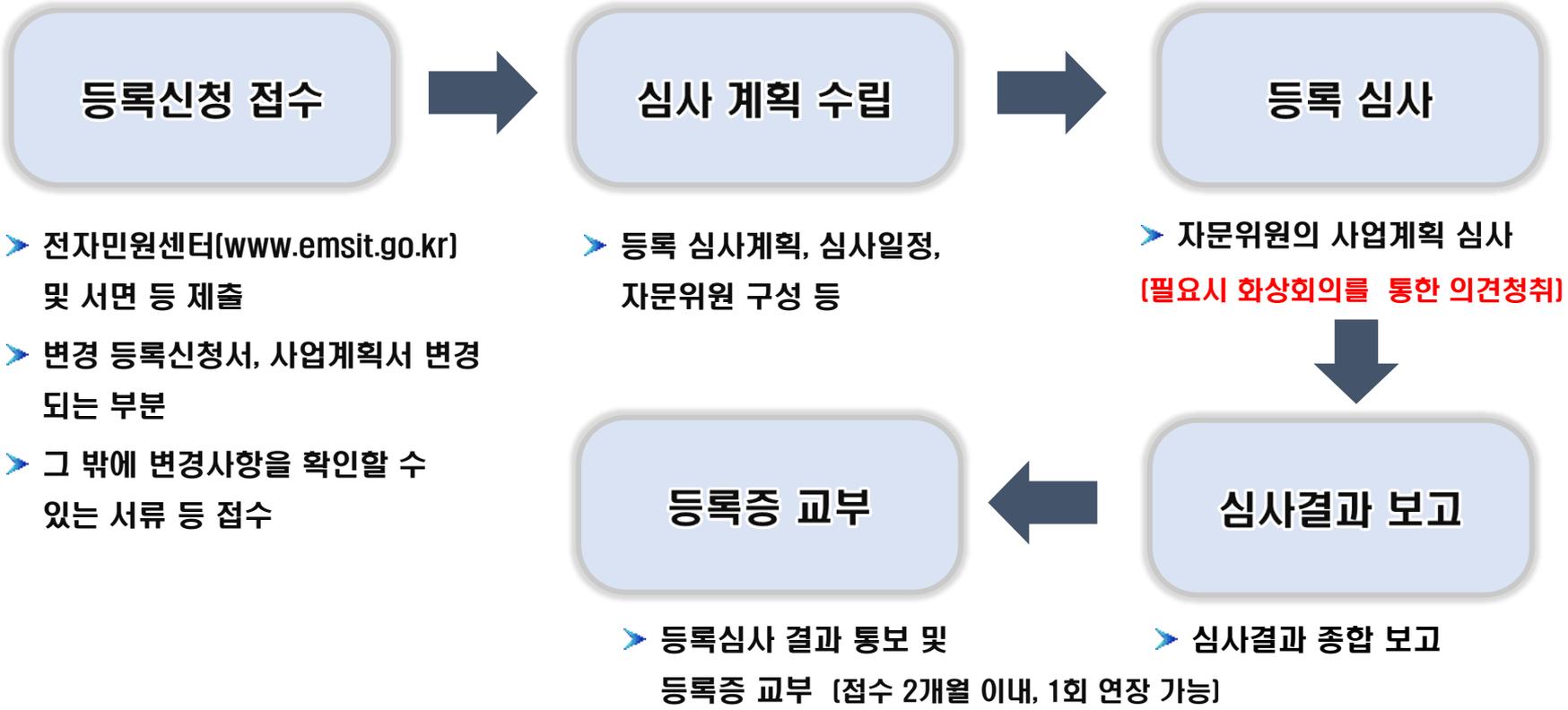
### 준비 서류

- **(변경 등록)** ①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최초 허가(등록) 시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③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등



# 1-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 변경 등록 절차





## 1-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 변경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변경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자료 검토

- ▶ 기존 및 변경 사항 및 사업자 정보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등록증 교부

- ▶ 신고 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1-3.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관련 규정

- 제7조제1항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 1-3.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관련 규정

-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1-3.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양수 및 합병 |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1항 제2호 |
| 통지      | ○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2항제8호  |



## 1-3.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시 기

- 법인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점 전

### 준비 서류

- **(양도·양수 인가)**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 **(합병·분할 인가)** ①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 1-3.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 분할, 양·수도 인가



## 변경 신고 절차

인가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및 서면 등 제출
- > 인가신청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심사 계획 수립

- > 등록 심사계획, 심사일정, 자문위원 구성 등

인가 심사

- > 자문위원의 사업계획 심사  
[필요시 화상회의를 통한 의견청취]

등록증 교부

- > 인가심사 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접수 2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심사결과 보고

- > 심사결과 종합 보고



## 1-4.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승인

### 관련 규정

- 제8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 제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 1-4.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승인

## 관련 규정

- 제8조제3항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휴업·폐업 | ○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2호     |
|       | ○ 승인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2천만원이하 과태료               | 제43조 제1항 제3호 |





## 1-4.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승인

### 시 기

- 휴업·폐업 시점 전

### 준비 서류

- **(휴업·폐업 승인)** ①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④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 1-4.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승인

### 신고 절차

승인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휴업·폐업 신청서, 통보계획서, 파기계획서 등

제출자료 검토

- > 신청서, 통보계획서, 파기계획서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결과 통보

- > 승인 결과 통보



## 2. 사물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실무 안내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관련 규정

- 제5조의2제1항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제9조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최초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li><li>○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li></ul>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0조<br>제1의2호, 2호 |

### 시 기

-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시행 전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준비 서류

####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①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② 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계획서,
- ③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⑥ 필요시 대리인 지정(위임)서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 ③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 ⑥ 필요시 대리인 지정(위임)서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신고신청서 작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제1항(제1호의2서식)

###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것에 √ 표시 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칸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      |            |                |    |
|------|------------|----------------|----|
| 업종번호 | 업종업자       | 처리기간           | 특시 |
|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홈페이지주소     | 담당자 E-Mail     |    |
| ①신고서 | 사업의 종류     | 사물위치정보사업 주요 실적 |    |

|      |         |     |
|------|---------|-----|
| ②변경시 | 주요 변경사항 | 기 록 |
|      |         | 변 경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_\_\_\_\_

###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①신고서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br>2. 사업을 주무청서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한 해당 설치의 입주 또는 점주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br>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br>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 ②변경시 | 1. 신고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등 서버 등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br>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               | ②변경시 |  |

### 합정정보 공표이유 명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합정정보의 공표이유를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불리하게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 처 리 및 차



210mm x 297mm [배상지(80% 이상)]

## 사업계획서 작성

[작성양식]

### “서비스명” 사물위치정보사업계획서

2018. 00. 00.

₩000

|     |                            |  |
|-----|----------------------------|--|
| 담당자 |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재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작성양식은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bsc.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안국인터넷진흥원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신고신청서 작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의무. [별지 제6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공란 상란선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특시     |
|------|-----------------------------|------------------|--------|
|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br>성명(대표자)        | 대표 전화번호          |        |
|      | 주소(주된 사무소)                  | 담당<br>영<br>자     | 전화번호   |
|      | 홈페이지주소                      |                  | E-Mail |
| ①신고시 | 사업의 종류<br>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주요 설명 |                  |        |
| ②변경시 | 주요 변경사항                     | 기<br>존<br>변<br>경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고인

|               |      |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①신고서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br>2. 사업을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br>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br>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br>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1부. |
|               | ②변경서 | 1. 신고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비스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함) 1부.<br>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발달공무원 확인사항

|      |  |
|------|--|
| ①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와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변경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리 령 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조사 → 신고 수리 결정 → 신고확인등(개사) 고부

신청인 처리기간      접수 처리기간      서류심사 처리기간      조사 처리기간      신고 수리 결정 처리기간      신고확인등(개사) 고부 신청인

210mm × 297mm [복합지(80g/㎡)]

## 사업계획서 작성

[작성양식]

### “서비스명”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2018. 00. 00.

(주)000

|     |                             |  |
|-----|-----------------------------|--|
| 담당자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재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작성양식은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bsc.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1.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최초 신고



### 최초 신고 절차

####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신고서, 사업계획서,
- > 사업자 등록증 등

#### 제출자료 검토

- > 기존 및 변경 사항 및 사업자 정보 등

####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 신고 확인증 교부

- > 신고 결과 통보 및 신고 확인증 교부

## 2-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 관련 규정

- 제5조의2제3항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 제9조제3항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 2-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위치정보시스템<br>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li> </ul>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1호       |
| 상호,<br>소재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li> </ul> | 500만원 이하<br>과태료             | 제43조<br>제3항제1호 |

## 2-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 시 기

-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전

### 준비 서류

- **(변경 신고) ①**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최초 신고 시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③**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등

## 2-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자료 검토

- > 기존 및 변경 사항 및 사업자 정보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신고 확인증 교부

- > 신고 결과 통보 및 신고 확인증 교부



## 2-3.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합병, 분할, 양·수도 신고

### 관련 규정

- 제7조제4항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양수, 상속 및 합병 | ○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2항 제1호 |
| 통지          | ○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2항제8호  |



## 2-3.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합병, 분할, 양·수도 신고

### 시 기

- 법인의 양도·양수/상속, 합병분할 시점 전

### 준비 서류

- **(양도·양수 신고)** ①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합병·분할 신고)** ①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상속 신고)** ①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3.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합병, 분할, 양·수도 신고

###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양도·양수 신고서 등, 양도·양수 계약서 등, 사업계획서 변경되는 부분,
- >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자료 검토

- > 신고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신고 확인증 교부

- > 신고 결과 통보 및 신고 확인증 교부

## 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도 ·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관련 규정

- 법 제10조제1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 제1항 또는 제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 ·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 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관련 규정

-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도 ·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양수, 상속 및 합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 · 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 · 분할의 신고를 한 자</li> </ul>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2항 제1호 |
|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li> </ul>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제2항제8호  |

## 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도 ·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시 기

- 양도 · 양수/상속, 합병분할 시점

### 준비 서류

- **(양도 · 양수 신고)** ① 위치기반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합병 · 분할 신고)** ① 위치기반사업합병 · 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합병 ·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 · 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상속 신고)** ① 위치기반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양도·양수 신고서 등, 양도·양수 계약서 등, 사업계획서 변경되는 부분,
- ▶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자료 검토

- ▶ 신고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신고 확인증 교부

- ▶ 신고 결과 통보 및 신고 확인증 교부



## 2-5.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관련 규정

- 제8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고

- 제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고



## 2-5.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휴업·폐업 | ○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2호       |
|       |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신고를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br>과태료               | 제43조<br>제2항제2호 |



## 2-5.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시 기

- 휴업·폐업 시점 전

### 준비 서류

- **(휴업·폐업 승인)** ①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 2-5.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휴업·폐업 신고서, 파기계획서 등

제출자료 검토

- > 신고서, 파기계획서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결과 통보

- > 신고 결과 통보



## 2-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관련 규정

- 제11조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1조제2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 2-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관련 규정

- 제1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벌 규정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 조항             |
|-------|---------------------------------|-----------------------------|----------------|
| 휴업·폐업 | ○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br>제2호    |
|       |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신고를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br>과태료               | 제43조<br>제2항제2호 |



## 2-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시 기

- 휴업·폐업 시점 전

### 준비 서류

- **(휴업·폐업 승인)**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 2-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휴·폐업 신고

### 신고 절차

신고신청 접수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제출
- > 휴업·폐업 신고서, 파기계획서 등

제출자료 검토

- > 신고서, 파기계획서 등

결과 보고

- > 검토결과 보고

결과 통보

- > 신고 결과 통보

**감사합니다**